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등 금지〉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7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등 금지	3
※ 참고자료	12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12
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처리 절차	13
3.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 소요기간(신청~심의·의결)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Ⅲ.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IV. 검토의견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등 금지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3항----- ----- -----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생략) <신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 (생 략)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제9조(시정명령) ① -----
---- 제8조제1항을-----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3항-----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제17조(과태료)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8조제3항----- --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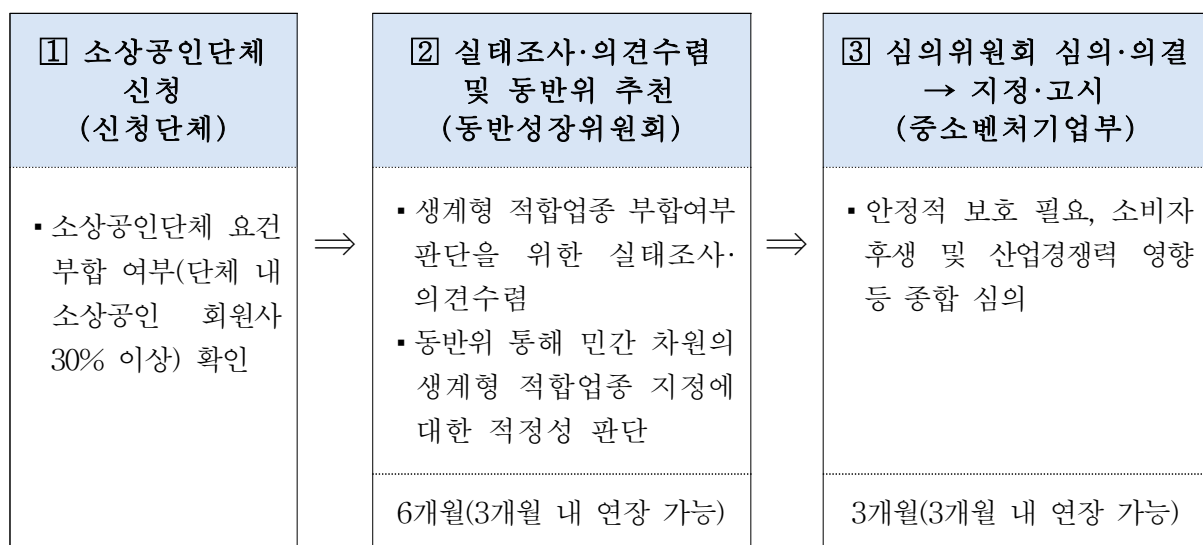
현행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① 소상공인단체 신청, ② 실태조사·의견수렴 및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최대 9개월 소요¹⁾), ③ 심의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최대 6개월 소요²⁾)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참고자료 2).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지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대 15개월³⁾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표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절차



따라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 이후부터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 이후 심의·의결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8개월임(참고자료 3).

동안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선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제한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만으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법률의 권리 제한에 있어 피해 최소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보임.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을 하지 않거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부결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의 지연에 따른 대기업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행정청의 행위 없이 민간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행위만으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악용될 소지도 있음. 셋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품목 중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4)는 각각 중소기업 적합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 및 지정된 후 1년 이내 그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정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 않아도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의 경우 지정신청 이후에도 종전 지정기간 등이 남아 있어 현행법 제8조제1항(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징역)과 개정안 제8조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소상공인 보호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⁵⁾처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대기업등에 대한 일시정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지 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⁵⁾의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할 것을 대기업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기업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권고대상, 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⁶⁾이 가능하며,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⁷⁾.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⁵⁾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⁵⁾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 및 일시정지 절차

구 분	내 용
제33조 <사업조정 권고>	사업조정 신청 →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조정 권고 → (미이행시) <u>공표</u> → <u>이행명령</u> → <u>벌칙</u>
제34조 <일시정지 권고>	사업조정 신청 → 일시정지 권고 → (미이행시) <u>공표</u> → <u>사업조정심 의회 심의</u> → <u>이행명령</u> → <u>과태료</u>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및 ②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으로 인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

현행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그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에 적용되는 일시정지 권고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만으

로 불특정 대기업 전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며,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진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를 통해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⁸⁾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만으로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대기업등의 시장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중소기업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등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정안의 사업 참여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8)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의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 동 법률은 사업조정에 대한 이행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 금지 위반과 벌칙의 수준이 동일하고, 두 법률의 제재조치 대상인 대기업등에 대한 적용범위가 같으므로, 현행법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제도개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
 - * 위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을 부과
- ☐ **(근거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18.6.12제정, '18.12.13시행)
- ☐ **(신청대상)**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이내, ②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이내, ③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간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 **(규제대상)** 대기업등(중견기업 포함)
- ☐ **(지정기간)** 5년
- ☐ **(처리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실태조사·추천의견(동반성장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내) → 중기부 지정·고시 → 사후 관리
 - * **(심의위원회)**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의 민간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
- ☐ **(심의기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 고려
- ☐ **(대기업등 진출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관련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사항 승인·적용
 - *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에게 3년 이내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제11조)

< 유효한 지정 업종(11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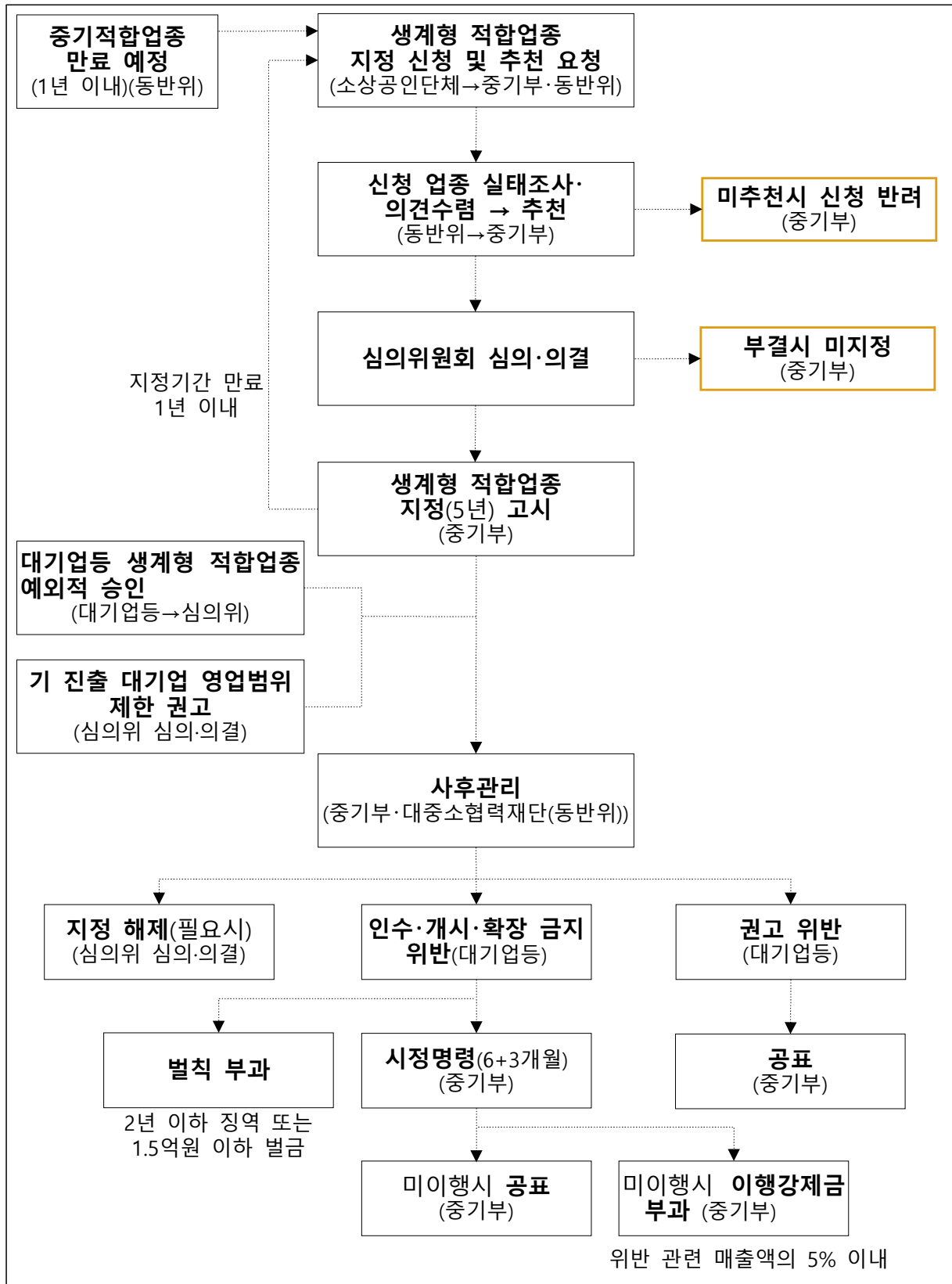
번호	업종	지정기간	번호	업종	지정기간
1	서점업	'19.10.18 ~ '29.10.17	7	된장 제조업	'20.1.1 ~ '24.12.31
2	LPG연료 소매업	'19.11.20 ~ '29.11.19	8	청국장 제조업	'20.1.1 ~ '24.12.31
3	자판기운영업	'19.11.20 ~ '24.11.19	9	국수 제조업	'21.1.1 ~ '25.12.31
4	두부 제조업	'20.1.1 ~ '24.12.31	10	냉면 제조업	'21.1.1 ~ '25.12.31
5	간장 제조업	'20.1.1 ~ '24.12.31	11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1.9.16 ~ '26.9.15
6	고추장 제조업	'20.1.1 ~ '24.12.31			

* 서점업, LPG연료소매업은 다시 지정('24년)

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처리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3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 소요기간(신청~심의·의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이후 심의·의결까지 평균 8.8개월 소요(지정 업종 기준)

연번	업종명	신청일	동반위 추천	심의위 심의·의결		지정일
					소요기간 (신청~)	
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9.2.11	'19.7.29	'19.10.2	7개월	'19.10.18
		'24.2.28	'24.10.10	'24.10.14	7개월	'24.10.18
2	LPG연료 소매업	'19.3.5.	'19.7.29	'19.11.4	7개월	'19.11.20
		'24.3.28	24.10.10	'24.10.14	6개월	'24.11.20
3	자동판매기 운영업	'19.2.15	'19.7.29	'19.11.4	8개월	'19.11.20
4	간장 제조업	'19.3.14	'19.9.11	'19.12.18	9개월	'20.1.1
5	고추장 제조업	'19.3.14	'19.9.11	'19.12.18	9개월	'20.1.1
6	된장 제조업	'19.3.14	'19.9.11	'19.12.18	9개월	'20.1.1
7	청국장 제조업	'19.3.14	'19.9.11	'19.12.18	9개월	'20.1.1
8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9.3.22	'19.9.11	'19.12.16	8개월	'20.1.1
9	국수 제조업	'19.12.10	'20.9.9	'20.12.16	12개월	'21.1.1
10	냉면 제조업	'19.12.10	'20.9.9	'20.12.16	12개월	'21.1.1
11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20.8.28	'21.4.30	'21.9.1	12개월	'21.9.16